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인당 20,000원"을 "1인당 25,000원(단, 실기과목 응시자는 3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